##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위조 사

## 문서 행사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0. 8. 2009고합1363,1438(병합),2010고합319(병합)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양진호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전병식

## 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.
- 2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, 3, 4, 5, 6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